

# 知(的)所(有)權(紛)爭(事)例

## 特定人の講演과 財産權

—講演者自身の 所有로 歸屬—

<1959年 10月 23日, 美聯邦콜롬비아 地法判決>

1. 原告: 퍼블릭 어페어즈協會

2. 被告: 海軍中將

3. 事件概要

原告는 被告의 어느 講演內容을 出版하겠다고 書信을 보냈다. 그러나 被告는 머지않아 出版豫定인 自己書籍에 그 강연이 收錄될 것이므로 許容할 수 없다고 拒絕하였다.

원고는 被告에게 강연은 公人の 資格으로 한 것이므로 그 利用을 制限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電話로 말했다. 被告는 自身이 出版豫定인 出版社로 하여금 原告出版社에 대하여 원고가 강연내용을 출판함으로써 被告의 權利를 侵害한다면 訴訟을 提起하겠다고 警告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그 海軍中將을 相對로 그에게는 著作權이 없다는 判決을 要求하여 提訴하였다.

當事者인 하이먼 리코버中將은 1955年 10月 20일부터 訴訟이 시작된 1959年 1월 16일 사이에 核이나 教育등 여러가지 問題에 대하여 많은 機關, 그를 相對로 강연한 바 있다. 또한 同講演內容은 油印 등으로 關係人들에게 配布하였고 몇가지 主題는 著作權으로 登錄되었다.

그러나 원고인 출판회사는 강연이 被告의 公務上 副產物이며 政府의 時間이 되는 公務中에 準備되었고 政府의 設備로 作成되었으므로 그의 강연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講演素材는 公有物이므로 希望하는 利用者는 누구나 複製할 수가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대해 被告는 문제의 강연이

被告의 公的義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은 그가 한 강연에 저작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아무나 無斷으로 利用配布하는 것을 禁止할 수가 있다고 抗辯하였다.

4. 判決要旨

同事件을 擔當한 홀초프判事는

(1) 政府公務員과 雇傭인이 작성한 出版物은 3가지로 分類할 수가 있으며 첫째가 정부공무원, 고용인에 의해 공무의 一部로서 작성되어 公文書로서 政府에 의해 發刊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고용인은 정부를 위해서 쓰게끔 雇傭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視察에 의해 작성된 地圖, 便覽, 公報, 戰史 따위는 공무의 產物인 까닭에 저작권은 政府에 歸屬하며 法에 따라 公有物이다.

둘째는 공무와 전혀 無關한 경우로서 公務員이 쓴 小説, 詩, 歷史 등은 個人의 權利에 속한다.

셋째는 前記 2가지의 中間의 경우인데 강연을 위한 執筆自體는 공무의 일부가 아니지만 그것이 그의 公的活動의 色彩를 띠고 있고 또 公적활동의 副產物이므로 本件에서의 被告의 저작은 이 셋째 그룹에 속한다.

(2) 모든 政府의 공무원, 고용인이 그 使用者에 대하여 忠誠義務를 갖는 것은 當然하며 그는 이 機能實行을 위해 最善의 努力을 하고 그 全能力, 知識, 經驗을 이용하는 法的, 道德的인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고용인이란 事實만으로 自己頭腦全部의 產物을 使用者에게

賣渡하거나 抵當하는 者는 없다.

공무원 고용인은 意當 自由行爲者이다. 그의 知的產物은 그 自身の 것이며 自動적으로 政府의 財産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의 아이디어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公務遂行 結果로서 얻어졌다 해도 그 狀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어느 人間이 政府에 고용되어 있다는 理由로 그 知的成長을 妨害하고 그 아이디어의 發展을 沮害당한다는 것은 公的利益에 不適하다. 더우기 저작권의 資格問題와 그 作品의 一部分이 公務時間中에 이루어졌다거나 秘書가 原稿를 整理 또는 複寫를 위하여 官廳의 複寫機를 사용하였다는 따위의 考慮에서 決定될 수는 없다. 萬若 어떠한 政府機關일지라도 이 方針에 反對한다면 法規로서 그같이 결정할 수가 있으나 공무원, 고용인으로부터 그같은 권리를 빼앗는 規定은 없다.

이 사건으로 法務部에 대하여 本訴의 繫屬을 通知하고 政府顧問이 法廷의 助言者로서 出席할 機會를 주었음에도 不拘하고 이 招待에 不應했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政府는 문제의 저작에 대하여 利益을 생각치 않고 어떠한 優越의 權利의 주장도 不願하고 있다. 또 저작이 公有라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推認된다.

(4) 以上の 이유로서 이 저작은 公有物이 아니며 禁反言法과 著作權法에 의해 保護되는 範圍內에서 著作者個人의 財産이 된다.